

# 「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·자활 지원조례」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 검토 보고

문순규 의원 발의 조례 「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검토의견임

## I 의원발의 조례개정 개요

### 1 관련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및 제66조(의안의 발의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)
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### 2 조례안 개요

- 조례안명 : 「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·자활 지원 조례안」
- 상정시기 :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
- 제안자 :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
- 제안이유

창원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·정비함에 있어 「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#### ○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: 생계, 주거안정, 직업훈련비,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- 지원대상 및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- 지원 및 관리, 지원중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)

## Ⅱ 담당부서 검토내용

### ① 법령 개정 사항

#### ○ 관계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)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제정)
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#### ○ 관계 법령 검토

- 「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·자활 지원 조례안」  
검토결과  
⇒ 상위법 및 개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
### ②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

#### ○ 조례안 제6조(지원대상 선정위원회) 수정의견

- : 위원 중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토록 함.  
⇒ 시장이 위촉한다를 “**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**” 로 수정하는 의견

### ③ 타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현황 : 12개소

구분		자치단체명
광역지자체		경기, 부산, 대구, 광주, 인천
기초지자체	서울	성북구, 영등포구
	경기	수원시
	강원	원주시
	충남	아산시
	전북	전주시
	전남	여수시

#### 4 소요예산(추계)

##### ○ 재정부담항목

- 조례안 제4조(지원내용)

##### ○ 소요예산(추계)

- 비용추계기간 : 2020년 ~ 2023년(4년간)

- 비용추계근거 : 타지자체 지원내용 및 금액으로 추산

- 지원인원 : 80여명 추산

- 지원내용 : 1인 최대 2,260만원(동반자녀 미포함)

구분	생계비	주거안정비	직업훈련비 등	비고
지원내용	1,200만원 이내 - 월 100만원/최대 12개월 (동반자녀 추가지원 / 3인 각10만원)	700만원 이내	360만원 이내 - 월 30만원// 12개월	

- 연도별 소요예산 추계

(단위 : 백만원/명)

구분	합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비고
소요예산	1,808	0	452	678	678	2022년까지 신청
추계인원	80	0	20	30	30	

#### 5 종합의견 : 조례안 제정 찬성(일부 수정의견)

##### ○ 상위법 저촉여부 : 해당없음

○ 불법 성매매근절 및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자립·자활을 위해 사회적 지원 체계 확보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- 붙임 1. 의원발의 조례제정(안) 1부.  
 2. 조례 수정(안) 1부.  
 3. 비용추계서 1부.  
 4. 타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1부. 끝.